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신탁업자: 국민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
PCA 베스트그로쓰증권투자신탁 A- 1[주식]

나.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

다.보관.관리기간:10.04.02 ~ 11.04.01

라.집합투자업자: PCA 투신운용(주)

마.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:

BNG 증권, HSBC 은행, SC 제일은행, 교보증권,
대신증권, 대우증권, 메리츠종합금융,
신한금융투자, SK 증권, 키움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10.05.03	법규변경	-	판매보수 인하등
10.07.26	법규변경	-	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(2009.12.21, 2010.06.13 시행)
10.07.26	클래스 변경및신설	F -	C-F 변경 클래스 C,C-E,C-W 신설
10.10.25	보수변경	-	체감식(CDSC) 보수체계 적용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운용 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10.07.26	말소	홍순모	-	2109000972
10.07.26	신규	김성훈	-	2109000780
11.02.08	말소	김성훈	-	2109000780
11.02.08	신규	김상환	-	2109000759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

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.교체.해임에 관한 사항

- 해당없음

7. 법 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☐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

부합하는지의 여부: 적합

☐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: 적정

☐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: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: 공정

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
산출되었는지의 여부: 적정

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
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
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
이행명세: 적정

☐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
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: 해당없음

☐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
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: 해당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
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
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
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